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팻 보 이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맛있는도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25042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5.04.0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4.09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인하고 귀하의 재정상태를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302호

대표전화번호 : 070 4035 3658 / 대표팩스번호 : 070 4009 2884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70 4035 3658 / matdo@matdo.co.kr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맛있는도전	팻보이 외 1개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302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9.05.20.	2019.05.23.	김재혁	070 4035 3658	070 4009 2884
	법인등록번호	110111-7111844	사업자등록번호	464-88-01216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재혁	팻보이 외 1개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302호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재혁	070 4035 3658	070 4009 288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상무이사	박인철	팻보이 외 1개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302호		
			대표자 ^②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재혁	070 4035 3658	070 4009 288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팻보이 소울풀버거] 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팻보이	수제버거 전문점
상 호	팻보이 버거 00점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번호 : 4020240031954 해당 상표권은 현재 출원 중으로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함을 알립니다.
광 고	사진 및 설치형 광고물	홍보용으로 촬영 제작된 사진과 설치물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344,206	323,213	20,992	427,285	-66,179	-48,140
2023	324,645	301,382	23,262	568,781	-96,604	-92,729
2024	404,656	371,242	33,413	978,571	9,170	10,150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③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④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재혁	대표이사	2020.05.01.~현재	(주) 맛있는도전 대표이사	가맹본부 총괄
	박인철	상무이사	2017.03.15.~현재	(주) 레인메이커필름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18.12.12.~현재	(주) 아이플레이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19.05.23.~2020.05.01	(주) 맛있는도전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0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경영기간	사 용 내 용
가맹본부	아르떼 로제 떡볶이	가맹사업경영	2021.07.13.~2024.05.01	자진 취소 하였음
가맹본부	이태리면가게	가맹사업경영	2019.06.19.~현재 운영중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출원 및 등록공고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팻보이 (상표권)	상표 사용	출원공고일자: 2024.02.21	출원공고번호: 4020240031954	(주)맛있는도전	출원신청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현재 출원 중으로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함을 알립니다.

II. 가맹본부의 [팻보이] 가맹사업 현황

1. [팻보이]를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2024 년 7월 3일 [직영점 오픈일 : 24년 3월 1일]

2. [팻보이] 연혁

가맹본부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맛있는 도전	팻보이	김재혁	2024.03.01~현재	서울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302호

3. [팻보이] 업종

영업표지	업종	
팻보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패스트푸드	버거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펫보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0	0	0	0	0	0	0	1	1
서울	0	0	0	0	0	0	0	1	1
부산	0	0	0	0	0	0	0	0	—
대구	0	0	0	0	0	0	0	0	—
인천	0	0	0	0	0	0	0	0	—
광주	0	0	0	0	0	0	0	0	—
대전	0	0	0	0	0	0	0	0	—
울산	0	0	0	0	0	0	0	0	—
세종	0	0	0	0	0	0	0	0	—
경기	0	0	0	0	0	0	0	0	—
강원	0	0	0	0	0	0	0	0	—
충북	0	0	0	0	0	0	0	0	—
충남	0	0	0	0	0	0	0	0	—
전북	0	0	0	0	0	0	0	0	—
전남	0	0	0	0	0	0	0	0	—
경북	0	0	0	0	0	0	0	0	—
경남	0	0	0	0	0	0	0	0	—
제주	0	0	0	0	0	0	0	0	—

5. 바로 전 3년간 [펫보이]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2024	0	1	0	0	0	1

(단위: 개)

6. [펫보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이태리면가게]와 [아르떼 로제 떡볶이]를 운영하였습니다.

구분	가맹본부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맛있는도전	아르떼로제떡볶이	제20214345호	분식	3/0	등록취소	—
가맹본부	맛있는도전	이태리면가게	제20190954호	서양식	25/0	25/0	25/0

* 당사의 아르떼로제떡볶이 가맹사업은 2023년 5월에 자진취소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팻보이] 가맹점 사업자 한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매출액(상한)		연간 평균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상한	면적 3.3㎡	하한	면적 3.3㎡	
전체	1	-	-	-	-	-	-	
서울	1							6개월 미만
부산	0							
대구	0							
인천	0							
광주	0							
대전	0							
울산	0							
세종	0							
경기	0							
강원	0							
충북	0							
충남	0							
전북	0							
전남	0							
경북	0							
경남	0							
제주	0							

[매출액]

※가맹점이 5개 미만 지역인 경우 가맹점 매출의 직접적인 노출이 우려되어 내용에서 제외되었으며, 자료의 객관성을 위해 운영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가맹점은 제외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시장경제,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맹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기에 기재된 매출액은 추정치로 실제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별로 시장상황, 물품 공급액,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팻보이]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	------------	---------

2024	1	181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광고, 판촉비로 지출한 비용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므로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5조 2에 따라 귀하의 예치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연락처	070-4820-1758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맛있는도전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가맹금에 해당되는 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팻보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별도 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11,000		
가입비	5,500	계약체결 당일 지급	
교육비	5,500	계약체결 당일 지급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2) 보증금

당사는 귀하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5,000,000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신규 가맹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계	16,000	8,850
가입비	5,500	1,650
교육비	5,500	2,200
계약 이행 보증금	5,000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1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 기준 (약 20평)	내용	비고
총계		61,000	전체 비용	
내/외부사인	지정업체	6,000	외부 간판 및 설치형 광고물	
인테리어	지정업체	30,000	금속/목공/도장/바닥/천장/조명	
가구	지정업체	3,000	제작 가구(테이블, 의자, 소파)	
주방 설비	가맹본부	20,000	가스, 덕트, 간판, 수도설비, 내부 전체 도색, 바닥 시공	
소품 및 유니폼		2,000	냉장고, 냉동고, 싱크대, 작업대, 소집기 등	
기타 비용	자체 조달	부동산 보증금,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테라스, 소모품비, 사업자등록 등 대행 대가		별도 비용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 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440,000원 (부가세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위 시공 내역 및 지급 사항은 당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최소 점포 기준 53㎡ 이상 전기, 가스, 수도, 덕트 등 당사 점포 운영이 가능한 점포 당사 브랜드와의 사업 적합성 판단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 선정을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다음의 A, B안 중에서 선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과정
A안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가맹희망자가 선정한 입지를 바탕으로 협의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입지 결정 ※ 당사 브랜드 기준과 맞지 않아 새로운 입지를 정하는 경우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B안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70-4820-1758)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입지 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경영마인드에 부합할 시	보건증 소지자일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팻보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①	지급대상②	금액③	지급기한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④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 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액 3000만원 이하:고정금액 200,000 월 매출액 3천만원 이상 : 월 매출액의 1.3%	익월 10일 본사 결제일 에 지급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비용으로 반 환되지 않음	
지연이자⑥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 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 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은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의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는 매년 계약일이 도래하는 월에 별도의 가맹금 납부없이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업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팻보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교육비(220만원, VAT 포함)를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잔여 갱신 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 교육비를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관계서류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및 웹상의 등록된 정보들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팻보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품목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 1 : 공급 원·부재료 등의 내역, 별첨 2 : 공급 주방기기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별첨 4>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팻보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②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③	경제적 이익의 내용 ^④	비고
-----------------	----	--	-------------------------	----

해당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2 메뉴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가 제공한 상품 및 재료를 타 브랜드나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등 당사와 미계약한 다른 곳에 공급하거나 납품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맹본사의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첨2 문서를 참고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②	
	가맹본부	계열회사
버거	팻보이 소울폴버거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정함에 있어 특수상권과 특수상권이 아닌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수상권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공항, 병원, 학교, 지하철역, 방송국, 호텔, 시장, 지하상가 등을 의미합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점포가 위치한 특수상권 내	계약 체결시 지도로 영업지역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수도권,광역시 : 직선거리 2km, 그 외 지역 : 직선거리 3km	계약 체결시 지도로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팻보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32.74%	67.26%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 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팻보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터 1년입니다.

*로열티는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나 당사의 서비스 변화 등을 고려하여 로열티의 인상에 대한 추
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갱신이나 연장일 90일 이전까지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
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 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 귀책 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가 1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1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서 제11조 제6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가맹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2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	32조 2항

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2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2조 2항

귀하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귀책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본부가 파산한 경우
○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 가맹본부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채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귀하와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해지일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A

A = 잔여계약기간 기준: 1년 미만 시 2개월분,

1년 이상 ~ 2년 미만 시 4개월분

2년 이상 시 6개월분

*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만 기준에 산입한다. 다만, 전체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일의 매출액을 일할 계산하여 월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수정 완료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 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 3자로 하여금 팻보이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가맹 계약의 기간	버거	국내 전 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팻보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영업시간은 계약체결 시 협의	주 6일, 일 9시간 이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필수 운영 인원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본사 교육 이수)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담당팀 ^②	비고 ^③
매장 청결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본사 운영관리팀	
친절도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품질 관리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공정위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관리표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펫보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광고 성격 ^②		부담비율		분담 절차 ^④
			본사부담 ^③	가맹점부담	
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	-
	개별광고		-	10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가맹본부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 및 지역광 고	브랜드 광고	50%	광고비 50% 중 전체 또는 지역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실시 30일 전 계획안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거부 불가)
		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판촉행사	전국 및 지역별 판촉				
	개별판촉		-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 가맹본부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에 계획안을 발송해 가맹본부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를 받고 난 후에 광고·판촉 활동이 가능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귀하가 당사와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가맹계약서 제3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영업표지 사용중단 및 철거, 매뉴얼 등의 반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와 귀하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 3자에게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당사가 가맹사업을 제 3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해지일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A

A = 잔여계약기간 기준 : 1년 미만 시 2개월분,
1년 이상 ~ 2년 미만시 4개월분, 2년 이상 시 6개월분

*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만 기준에 산입한다. 다만, 전체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 일의 매출액을 일할 계산하여 월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4)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5조 3항에 명시된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별로 최초 가맹금과 위반일수에 따른 로열티 및 물류마진에 해당되는 금액 (만약 당사로부터 금액을 할인 또는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위약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5조 1항과 2항에 명시된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6)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3조 1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부재료 등을 조달하여 브랜드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별로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금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위약별 이외에 다른 계약

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 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가맹사업자의 영업에 심각한 손해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3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36일 내외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제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 ~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14일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가맹계약 체결	- 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제공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수령	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및 부동산 매물 조사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온라인 / 부동산	
점포실측 및 설계	- 투자비 산출 - 도면협의 및 개점 일정 확인	2일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 실시	15일	
교육실시	- 메뉴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14일	
영업설비/집기 입고	- 주방설비 입고 - 그릇 등 집기 입고	2일	
초도물품 입고	- 유니폼 등 입고 - 식자재 등 입고	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예

- 점포개발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지연될 때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간 협의가 있을 때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때
- 부동산 매물의 조사와 협의가 늦어질 때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요청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①	절 차 ^②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가맹점 의 경영 상태를 파악한 후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과건비용 가맹본부 부담 (물품, 집기등의 구매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일시, 소요비용등 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 맹점 방문 후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팻бой]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신용 제공 등 내역이 없습니다.

5.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 조건	지원 기간	지원 내용	비고
-	-	-	-	-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팻보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①	교육시간	비용	비고 ^②
신규 교육 (개점 전)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	실습교육 (지정 교육장)	14일 (상호 협의 하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최초 가맹금에 포함	필수 교육
신메뉴 교육 (개점 후)	메뉴 조리방법	집체교육 or 개별교육	메뉴에 따라 상이	실비	필수 교육 (신메뉴 개발 시 실시)
정기교육 및 부정기 교육	운영방침 및 판매/서비스기법 등	집체교육 or 개별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실비	필수 교육

2.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3)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신메뉴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팻보이 마곡점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4로 22 파인스퀘어 A동 2층 219호)

2)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05일

3)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매출액 산정기준

695,857,518원

[직영점 매출 산정 기준]

본 매출액은 직영점의 실제 운영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뒤 이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수치입니다.

※ 본 매출액은 시장 상황, 공급 비용, 점주의 운영 방식 및 노력 등에 따라 가맹점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수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수치는 추정치이며, 귀하의 실제 수입과 같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 공급 원 · 부재료 등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 공급 주방기기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 필수품목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안내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필수품목리스트를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필수품목 사용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내역 중 공급업체 권유품목을 지정 공급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한 사양의 제품이 아닌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첨 3 : 메뉴명 및 판매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메뉴명 및 판매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안내할 수 있습니다.

별첨 4 : 공급가격 결정 기준 - 24년 8월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5 : 2022년-2024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